

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.

1. 징계대상

가. 성 명: 이 권 우

나. 생년월일: 1968.04.04.

다. 소 속: (주)감정평가법인세종 경기지사

(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, 1201호(인계동, 마라톤빌딩))

2. 징계내용

가. 징계종류: 업무정지 1년

나. 효력발생일: 2023.10.23. ~ 2024.10.22.

다. 사 유: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4항을 위반하고, 실제 날짜와 다르게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기준 시점, 조사기간, 작성일 등을 임의로 수정 발급하여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항, 제6조, 제25조제1항을 위반

2023년 10월 16일

국토교통부장관